

제9차 회의록

■ 회의날짜	@10/21/2024
: Tags	전체
▲ 작성자	박지현

참석

채현, 지현, 소희, 준하

회의 안건

- ✓ 퍼드백 해결 방법 회의
- 각자 개발 진행 내용 공유

회의 내용

- ▼ 제안 발표 피드백 내용
 - 1. 해당 서비스의 취지는 좋지만, 활성화된다면 저녁에만 상품을 싸게 사려는 손님들이 많아질것 같음.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?
 - 2. 회원가입 유형을 사장님과 손님으로 구분하였는데, 모든 기능이 동일하고 사장님에 게만 기능이 추가되면 굳이 두개의 분류로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
 - 3. 남았던 음식이 부패한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?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고객은 어떤 경로로 문의할 수 있는지?
 - 4. 배달의 민족의 B마트에서는 실시간으로 할인이 적용(신선 상품은 마감시간 할인을 하기도 함)되고, 잔여 수량을 확인할 수 있음. 고객 입장에서 B마트에 비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?
 - 5. 남은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신선도가 떨어져,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데 방어책이 있는지?

- 6. 식품의 상태를 검증하는 절차는 없는지?
- 7. 예약하기'하면 수락 절차 없이 바로 수락되는 것인지?

공통된 피드백: 남은 상품 안전성 문제 해결 어떻게 할지 상품 상태 검증 → 사진 + 픽업 시 확인 (이건 우리 앱 장점!)

식품 상태를 검증하는 절차 + 음식이 부패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방어책

<사장님 보호 대책 >

- "식품 로스" 기준에 대해 미리 정확한 안내 게시
- 예약하기 버튼 클릭 후, 안내문 팝업 추가
 - 당일 포장 제공 + 당일 2~3일 이내 섭취 권장

<소비자 보호 대책>

- 사장님 계정의 가게 입점 시 이용약관(아래 떠리몰 사례 참고)에 기입 한 번 더 상기
- 판매글 업로드 시 사장님이 직접 "기한 설정"
 - → 기한 지나도 판매 안됐을 시 게시물 자동삭제
- 고객 문의 (탭 클릭하면 1399 등으로 링크 연결되도록?)

< 피드백 4번 항목 반영 >

국내 사례

- 떠리몰
- 라스트오더
- **비마트** ← 추가
 - 마켓컬리와 같은 시스템. 즉 "비마트=식품로스판매몰" 이 아니라 비마트 내 '마감 세일' 서비스가 존재
 - 픽업뿐만 아니라 배달도 운영 (그러나 소비자의 배달비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라이 더 수수료도 부담이지 않을까)

- 픽업 가능한 가게가 별로 없음
- ∘ 게시물 리스트 상단에 위치하는 건 대기업(or체인점) 매점. (AD인지는 불분명)

< 피드백에 대한 응답 >

소소하게 👍 vs 비마트

- : 사장님이 직접 식품 사진을 찍어 업로드 vs 브랜드제공 이미지로만 업로드
- : 픽업하면서 한번 더 확인 가능 vs 배달만 되는 가게가 다수
- : 소상공인, 자영업자가 대상 vs 체인점과 대기업상품 판매가 주
- < "떠리몰 판매자센터" 에서의 가게 입점 시 이용약관 >

https://thirtymall.com/partner/terms.html

제 8조 (상품 정보의 제공 및 책임)

- ① "판매자"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"회사"가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"회사"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② "판매자"는 "회사"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"회사"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③ "판매자"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"고객"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"회사"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9조 (상품의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)

- ① "판매자"는 "사이트"에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"회사"가 견본품(샘플) 등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.
- ② "판매자"가 "사이트"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은 "판매자"가 "회사"에게 제출한 견본 품과 동일하여야 하며,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.
- ③ "회사"는 "판매자"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"판매자"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"판매자"는 자신의 부담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"회사"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④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"판매자"가 "사이트"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이 법적 기준 또는 계약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"회사"는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판매자"가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즉 사장님이 떠리몰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,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는 말.

--> 사장님 말고 **손님이 지켜야할 이용약관도 생각해보기**

교수님 추가 피드백

- → 가게 별 후기 기능 추가
- → 플랫폼 비즈니스 활용안 생각해보기
- → 된다면... 실제 가게에서 사용해볼 수 있도록...

공지사항

다음주까지 할 일

- ☐ FE: 로그인, 회원가입 페이지 구현
- ☐ BE: 로그인, 회원가입 데이터베이스

다음 회의

2024.10.23 (수) 강의 시간